

# 학술교류협정서

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와 평택대학교 지역개발학과는(이하 "양 학과") 교육의 효율적 증진을 위하여 상호협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양 학과는 교수 및 학생, 학술정보, 시설 등의 상호교류 및 활용과 연구 사업의 협력을 통하여 학과간 공동협력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고급인력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분야) 대상분야는 인재·교육·연구·학술활동·시설 등 관심분야로 한다.

제3조 (기본 운영원칙) 양 학과간 상호협력 교류에 있어 필요한 특별규정은 별도 합의하에 운영 한다.

제4조 (연구 및 교육참여) 양 학과는 서로 상대학과의 연구 및 교육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.  
1. 전공별 전임교수를 서로 초빙하여 특별강의를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문적 지식을 습득케 한다.  
2. 양 학과는 객원 연구원을 위촉하여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.

제5조 (교육파견) 학과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상대 학과에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인원수는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.

제6조 (시설·장비활용) 학과간 학술활동에 필요한 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7조 (학술정보 교류 및 자문) 학과간 학술 및 정보교류에 적극 협력하며 상대학과의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.

제8조 (기타) 본 협약서에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 학과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한다.

1998 년 9 월 25 일

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 
학과장 전 경 구

평택대학교 지역개발학과  
학과장 임 영 철

서 명

전 경 구

서 명

임 영 철